

전기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경기북부전기안전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92번길 41 1F 103호 (금정동)

T : 031-427-5859

F : 031-427-5856

E-mail : ggneg23@kakao.com

전기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주공프라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경기 북부 전기안전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표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 을 1통씩 보관한다

상호	박경희임대			대표자	박 경 희				
전기설비설치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49(가운동 676-1)								
수용설비	수전설비	수전전압	22,900 v	용량	250 kw	계약전력합계	250 kw		
	발전설비	전압	v	용량	kw				
	태양광발전	전압	v	용량	kw				
책임분계점	한국전력 수급계약서상 수급 지점.								
월정수수료	<u>월 일십만 원정 (₩ 100,000) - 부가가치세 별도</u>								
계좌이체	은행 : 농협 계좌번호 : 352-2142-6849-23								
계약유효기간 및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년 07월 10일부터 2026 년 07월 09일 까지로한다. 단, 위 기간 만료일까지 갑, 을 어느 측에서도 서면에 의한 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그 효력이 계속 되는것으로 한다. 그 이후는 위 예에 의한다.								
기타사항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첨 협약서에 의한다.								

* 별첨 : 전기안전관리규정 1부.

2025 년 07 월 10 일

위탁자(갑)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49(가운동 676-1)
상호 : 박경희임대

이메일 주소 : alfvwlrl@naver.com

대표자 성명 : 박경희

대표 번호 : 010-425



대행자(을)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92번길 41, 1F 103호 (금정동)

상호 : 경기북부전기안전

대표자 성명 : 정용호

대표번호 : 031-427-5859



제 1조 (통지 의무)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점검중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시.
3. 사고 기타 이상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
4. 상속등에 의하여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거나 업종대표자,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주소시설물 설치장소가 변경될 경우.

제 2조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을”이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2. “갑”的 사업자의 접근이 자연조건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3. “갑”的 사업장이 일시 폐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을”的 수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3조 (손해배상)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갑”이 중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
2. 전기 안전관리 대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갑”이 피해를 입은 경우.
3. 전기 안전관리 대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제 4조 (손해배상의 면책)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사항 및 “을”이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2. “갑”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제1조의 통지의무 이행을 지체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4. 제2조에 의한 사유 또는 “을”的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실시가 일시 정지 되었을 때.

제5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갑”과 “을”이 신의 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하였을시.
2. “갑”으로부터 점검거부 또는 사업장 내의 출입제한으로 “을”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심히 어려울 때.
3. 2개월이상 수수료의 체납으로 “을”이 “갑”에게 통고서를 발송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제6조 (계약의 해지 방법)

1. "갑"이 제4조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그뜻을 기재한 문서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을"이 "갑"의 해지 의사를 수락하는 문서를 발송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을"은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이경우 문서를 발송하는 날을 기준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제7조 (대무자)

1. "갑"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순서를 하는 자로 정함과 동시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을"과의 연락을 취할 연락책임자를 정하고 그 성명, 연락방법을 "을"에게 통지한다.
2. "갑"은 위 1항의 순서 근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 할 대무자를 지체없이
정하고 즉시 그 성명, 연락방법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3. "갑"은 연락책임자 또는 그 대무자로 하여금 "을"이 시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입회하도록 한다.

제8조 (수수료의 지급)

1. "갑"은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2. 수수료의 지급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에게 직접 납부 할수도 있다.
3. 신규계약 및 계약해지 해당월에 있어서의 수수료 적용방법은 해당월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 하였으면 매월말 법정 점검횟수에 불구하고 월정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